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법)

Compliace Guide Book



posco 포스코와이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법)

Compliace Guide Book



posco 포스코와이드

공정거래자율편람 접속 방법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업무 지원을 위해 배포한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책자 및 전자파일(PDF)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모바일 접속경로

>>>>>>>>>>>>>>>>> 모바일 그룹웨어 → 게시 → 공지사항 → 공정거래 자윤준수 편람





4. Q&A

관련부서 : 전 사업장/구매 Ι 하도급법 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법 위반 시 제재 03 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03 2) 하도급법의 구조 04 3) 관련 규정 05 4) 적용 범위 05 5) 법 적용 대상 사업자 06 6) 법 적용 대상 거래 10 7) 법 위반 시 제재 2. 거래단계별 법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12 1) 계약체결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 내용 22 2) 계약이행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 내용 3) 대금지급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 내용 41 51 3. 체크리스트

55

п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관련부서 : 전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CP의 정의 CP도입의 중요성 및 도입 요건 	61 61
	2. CP등급평가1) CP등급평가 정의 및 목적2) CP등급평가 인센티브	63 63
	3. 포스코와이드 CP 추진 경과 1) CP추진 경과	64

※ 참고문헌

- 포스코, 공정거래준수 편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 행 부 서 발 행 일 포스코와이드 정도경영사무국

2025년 1월

Ι

하도급법





1. |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 (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도급법 제1조)

※ 하도급법의 특성

- 민법 내지 상법의 특별법 : 하도급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우선 적용된다.
- 하도급법은 국내법 :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 사업자 (법인)인 경우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가진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 하도급법의 구조

하도급법은 크게 목적 및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발주자의 준수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필수적 으로 알아야 할 규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 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igcirc

하도급법 체계도

하도급	목적 및 적용대상	- 목 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적용업종: 제조, 수리, 건설, 용역 - 적용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 적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의 경우 7년)		
거래의 규제내용	원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 (9개)	- 서면교부, 서류보존 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하도급 거래의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3개)	 부당특약 설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반품 금지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 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탈법행위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감액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부당한 대물지급 금지 보복조치 금지 	
규제내용	발주자의 준수 의무사항 (1개)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		
의무사앙		• 서류보존 의무 • 신의성실 이행, 및 원사업자의 위법형	서류보존 의무 L의성실 이행,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3. | 관련 규정

하도급 관련 규정에는 하도급법과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고 있는 시행령, 공정위에서 필요에 따라 제정하는 각종 고시와 심사지침들이 있다.

(1) 법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부당특약 심사지침
- 부당특약 고시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고시
-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심시지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4. | 적용 범위

하도급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규정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법상 규정된 위탁의 범위(제조, 수리, 건설, 용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 하지 않아야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탈취 및 유용의 경우 7년)

※ 거래종료일의 의미

제조/수리/지식정보성과물의 위탁	건설위탁
목적물 납품 또는 인도한 날	공사 완공일

*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의미

5. | 법 적용 대상 사업자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사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발주자가 된다.

(1) 수급사업자

-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령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한다.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이하여야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 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 *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smba.go.kr/)에서 검색이 가능

(2) 원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중견기업 포함)
- 중소기업자 중 직전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자(제조업)
-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중견기업(직전 연간매출액 2조 원 초과)과 소규모중견기업 (업종별로 직전 연간매출액이 800억 원~3,000억 원 미만)으로 나뉘어진다. 대규모중견기업과 소규모중견기업이 하도급 관계가 형성될 경우, 소규모중견기업은 대금 지급 관련 규정에 한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는다.
 - *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위탁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60일 대금 지급)이 적용되어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음

[업무 시 유의 사항]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 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위 하도급 조사 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이므로, 대기업자인지 혹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수검 시 대응활동이 원활할 수 있다.
 - * 수급사업자의 구분을 평소에 명확히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조사에 대비해 선조치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지연이자 혹은 대금 지급을 불필요하게 선지급하거나 조사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업무 Loss발생, 조사 시 늑장 대응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다.

6. | 법 적용 대상 거래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용역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다.

\Rightarrow

가구제조업과 하도급법

(1) 제조위탁

- "제조 위탁"이란 사양을 지정하여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이다. 규격품, 범용품이 아닌 주문품의 위탁이 전형적인 제조위탁이다. 또한 제조 위탁에는 규격품 등을 가공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제조 위탁의 주요 유형.
- ① 판매용 물품의 제조 위탁
- ✓ 물품의 판매를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 주택 설비 메이커가 자신이 판매하는 자사 전용의 수전 금구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 건재 메이커가 자신이 판매하는 자사 전용의 벽지의 표면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② 수탁 생산용 물품의 제조 위탁
- ✓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서 원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이다.
 - : 고객으로부터 제조를 요청받은 건구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 주택설비 도매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요청받는 특수한 디자인의 욕조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 ③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의 제조 위탁
- ✓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이다.
 - : 주택 설비 유지사가 규격품의 배관 부품을 현장에 맞추도록 부품의 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2) 무료로 배포하는 카탈로그, 전단지, 브로셔 등의 문안, 레이아웃, 디자인, 인쇄 등

- 무료로 배포하는 카탈로그·전단지·팜플렛 등의 광고물의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그러한 광고 제작을 스스로 반복 계속하고 있는 경우는, 제조 위탁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한다. 또한 문안, 레이아웃, 디자인만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그 작성을 스스로 반복 계속하고 있을 때, 정보 성과물 작성 위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한다.

→ 하도급법상의 제조위탁 관련 고시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1) 제조위탁의 유형(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포함)을 제조 위탁하는 경우
- ① 여기서, 위탁범위의 판단기준은 위탁내용이 위탁사업자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탁 받은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위탁사업자의 승인 하에 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 ① 판단기준은 완제품의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 등을 규격을 지정하여 주문 제작한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 ② 예를 들어, 생산업자 등이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의 제조를 의뢰하거나 부품의 조립 등의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업무시유의사항]

- 규격품·표준품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단순구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격품· 표준품 일지라도 가공 등을 시킨 경우에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된다.
- 대체물의 경우, 특정 원사업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제조된다는 특성에 비추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위탁과 제조 간에 상당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
 - ✓ 시장구조, 거래형태, 생산물의 특성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 의존형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구매력을 행사하는 경우
 - ✓ 총생산량 대비 납품비율, 생산능력 대비 위탁물량의 규모 등이 일정수준에 달해 원사업자의 위탁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생산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안정되고 고정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양당사자간 위탁과 제조가 밀접히 연관된 경우
- 위탁 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 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의 요청으로 단순히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하도급거래에서 제외되는 위탁행위

-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 위탁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 하지 않고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Rightarrow

도급법상의 제조위탁 관련 고시 : 용역위탁 중 지식·성과물의 범위 고시

(1) 용역 위탁 중 지식·성과물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서 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이 정보성과물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자신이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이의 성과물의 작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예: 사내에서 사용하는 회계용 소프트웨어, 자사의 홈페이지)의 작성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사업자가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 이하 같음)의 작성을 위탁하는 것
 - (예)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 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
 -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② 사업자가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 ✔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7. | 법 위반 시 제재

(1) 분쟁조정(하도급법 제24조의4, 6)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기타 조합은 원·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정위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다.
-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시정조치(하도급법 제25조)

-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과징금 부과 (하도급법 제25조의3)

-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수급사업자의 경우도 서류보존의무 위반시 과징금대상)
- ※ 법위반행위 당시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므로, 법령 개정 전후를 구분
 - * 과징금 기본산정 기준 : 하도급대금의 2배 X 위반금액의 비율 X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
-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 또는 지급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지급)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4) 과태료 부과(하도급법 제30조의2)

- 조사 불출석자,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자는 1억 원, 관련 임직원은 1천만 원 이하 부과
-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2억 원, 관련 임직원은 5천만 원 이하 부과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는 5백만 원 이하 부과
-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미행자는 1백만 원 이하 부과

(5) 벌칙(하도급법 제30조)

-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 ※ 보복조치 위반시 3억원 이하, 경영간섭 및 탈법행위 위반시 1억 5천만원 이하
- 법 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의 경우 원칙적 고발
- 공정위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6) 손해배상책임(하도급법 제35조)

- 입증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전환되어 있고, 일부 법위반사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 ※ 3배 손해배상소송 대상 : 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금지, 보복조치
- ※ 5배 손해배상소송 대상 : 기술자료 유용(2024.8.28일부터 적용)
- 법원 자료제출명령(하도급법 제35조의2) 및 비밀유지명령(하도급법 제35조의3) 도입
- ※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
- ※ 한편, 소송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 유지 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 준비 서면 등에 영업 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함

(7) 고발

- 원칙적 고발(사업자)
 - ※ 기술유용행위금지(법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한 업체로서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8) 기타

-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표(법 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3년간 벌점 10점 초과)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직전(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누산벌점 4점
-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직전(공정위 시정조치일부터 역산) 3년간 누산벌점 5점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직전(공정위 시정조치일부터 역산) 3년간 누산벌점 10점
- ※ 과징금 가중 사유: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누산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 최대 20% 가중

0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하도급 거래의 계약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 3단계에서 단계별 주요 준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거래단계	준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견적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 단가 후려치기(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결정 등)
계약체결단계	 서면교부, 서류보존 의무 부당특약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계약이행단계	 부당특약 설정 금지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검사·결과 통지 의무 부당반품 금지 감액 금지 기술자료 제공 및 유용 금지
대금지급단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선급금 지급 의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1. ㅣ 계약체결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 내용



→) 서면 교부 및 서류 보존 의무

(1) 개념

-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하도급법 제3조).

(2) 원칙

- 중요사항(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기재사항]

-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 ②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③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④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⑥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 시에 하도급법상 요구 되는 구체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거나 기본 계약서를 보완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서면 발급 시점
 -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최소한 수급사업자가 물품 등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보존대상 서면 및 보존 기간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법상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및 하도급 거래의 중요사항을 담은 서면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법 위반 유형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불완전한 서면교부)
- 추가 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등 서면을 지연 교부한 경우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계약 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나, 실제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

[업무 시 유의사항]

[Do's]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 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업계 표준이나 거래 관행의 특성을 근거로 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발주서면에 하도급법상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견적수량과 주문수량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한다.
- 수량만 적시되어 있고, 단가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서면 교부 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 서면을 교부한다.

[Don'ts]

- 실거래행위와 다른 거짓서면 및 서류[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의 서류 사후 작성 등]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 업계 표준에 준하지 않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나 전용단말기의 도입은 다수의 발주자와 거래를 하는 수주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합리성이 없는 과도한 도입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하도급 관련 서류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폐기해서는 아니 된다.
- 협력사에 하도급 관련 서류 등을 3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는다(허위서류 보존).
-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5) 관련 사례

[사실관계]

000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서면미교부 및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부당반품을 이유로 과징금 20백만 원 및 시정 명령을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000는 금형 제작을 위탁한 후, 2015년 9월, 10월, 2016년 10월에 총 5회에 걸쳐 돌기 추가, 형상 변경 등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 명령을 내렸다.

→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1)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하도급법 제3조의4)

(2) 위법성 판단기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①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③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④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⑤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⑥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3) 법 위반 유형

-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된다.
-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즉,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된다. 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 또는 견적 착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부당특약의 한 유형이다.
-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단, 해당 작업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등에 기재된 작업공정, 품질·성능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를 말한다.
-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 ※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은 3년으로 약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화재·전염병·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을 말한다.
-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한
-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직접 신청하거나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도급계약기간 중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업무 시 유의사항]

- 부당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내용이 부당하면 처벌됨에 유의

[Do's]

- 기술 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특정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도록 하는 전속적 거래에 대한 약정은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규정을 참고해서 특약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Don'ts]

- 당사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 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책임 분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납품 후 또는 납입한 제품의 가공이나 열처리 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 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불량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5) 관련 사례

[사실관계]

000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9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 000은 2016년도에 23개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 사항으로 설정하였다.
- 또한 000은 2017년 10월 부터 2020년 11월까지 55개 하도급사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였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으로 총 계약금액의 10%를 각각 공탁받는 것 외에 추가로 법인대표이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총 계약금액의 3% 이내는 기성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설정하였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으로 판단하였다.

추가로 서면 미교부, 부당한 대금 결정 등을 판단하면서 시정명령 및 107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1) 위법성 판단기준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여부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 ①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②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된다(하도급법 제4조)

① '부당하게'의 판단기준

✔ 부당하다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판단 원칙

✓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 여부이다. 단,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되며, 신규 개발품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 등의 제조원가 +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라고 본다.

(2) 법 위반 유형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
- ✓ 일률적 단가인하는 제조하도급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인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②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동법 제4조 제2항 제2호)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만큼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취급(동법 제4조 제2항 제3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별 경영 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납기·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 ④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동법 제4조 제2항 제4호)
- ✓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협상 과정에서 종전 계약보다 발주량이 늘어날 것처럼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 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동법 제4조 제2항 제5호)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 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 결정(동법 제4조 제2항 제6호)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에는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재료비 및 노무비 이외의 제조원가 요소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함, 다만,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법정(法定) 경비는 제외) 등이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 결정(동법 제4조 제2항 제7호)

✓ 만약, 원사업자가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최저가 낙찰자와 낙찰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협상을 한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경쟁입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 먼저, 최저 입찰금액이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여 입찰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이때의 입찰예정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실제로 입찰 결과, 실행예산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 또한, 사전고지를 하였더라도 예정가격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낙찰자를 선정한 후 일방적으로 낙찰자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한다.

⑧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8호)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다.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예를 들면 경영적자, 임금인상이나 노조파업, 판매부진,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업무 시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경영상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
-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 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는 부당한 대금 결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새롭게 단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수출용품의 경우, 수출용과 내수용의 제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수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단가를 합의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출품의 경우 관세, 환율 등과 같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낮은 견적가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 시 유의사항]

- 경쟁입찰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에 해당된다.
- 예정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예정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음을 회사 내부 자료로 남기거나 공증을 통해 추후 예정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Do's]

- 최저 입찰금액이 당사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 공증을 받기 어렵다면(비용, 절차상의 번거로움) 사전에 예정가격이 확정되어 있었음을 회사의 기안 문서에 남겨놓아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수급사업 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재료 가격, 전기 및 가스등의 연료비 상승이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혐의하여야 한다.
- 비용 변동 시 가격의 재검토가 지체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가격 결정 시 재검토의 시기도 충분히 협의하고, 비용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격 결정시 국제적인 가격지표가 있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 비용 변동을 반영한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협의한다.

[Don'ts]

- 구매 담당자가 구매 관련 목표가를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절감을 요구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내수품과 수출품에 대해 동일한 단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낮은 단가 설정을 요구한 경우, 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낮은 단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5) 관련 사례

[사실관계]

000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하였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수급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하였다.

- * 2012년 15%, 2013년 0.63%, 2015년 4.9%, 2018년 1월 6.7% 인상하여, 2018년 가공비는 누적 인상율을 반영하면 2008년 대비 29.4% 인상됨
- **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경우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경우 1개 수급사업자만이 납품함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함에도 000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인상 하면서, 산업용 배터리 부품의 가공비는 동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ㅣ 계약이행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 부당한 위탁(발주) 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1) 유형

- 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위탁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에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다.
-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 당초에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
- ✓ 목적물 등의 수령 후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 ② 위탁 취소 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 발생, 영업취소·영업정지 처분,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조 등의 착수 거부 또는 수급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정위는 위탁 취소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합의의 진정성(절차 및 내용)을 검토하여, 진정성이 없는 경우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의 공급지연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
 -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하자가 있는 목적물 납품
 - ✓ 수급사업자가 생산 또는 운송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손·훼손된 목적물 납품

- 부당한 수령거부(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 ①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게 두게 되는 것으로 검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목적물을 이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하는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 ✓ 부당한 수령거부는 납기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부당한 수령거부의 판단기준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 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 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업무 시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소송(3배)의 대상이 된다.
- 발주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 하여야 한다.
- 계속적 거래를 암시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발주취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위탁취소의 사유가 하도급 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이 계약서에 따른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위탁취소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발주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 절차에 강압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 를 남겨놓아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 물품 수령 시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면,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 ✓ 원사업자는 모델단종, 사양변경, 물량감소, 해외이전, 생산취소, 생산지연 등으로 수급사업자와 관련 없는 책임으로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금전보상이나 물량 보전을 하더라도 수령거부 (또는 지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Do's]

- 발주취소사유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수령 시에는 검사전이라도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수령증에 검사 미완료 사실 및 향후 검사에서 하자 발견 시 조치계획 등을 기재).

[Don'ts]

- 당사의 보관 장소 부족, 불명확한 위탁내용·검사기준·납기일, 납기단축 통보, 원자재 공급 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하거나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 당사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원자재 공급 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당사의 계열회사 등 다른 사업자에게 발주하기 위해 이미 발주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작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작업 중단 전에 다른 수급 사업자에게 작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작업 중단에 대해 시정요구 및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가 선행 작업의 납기를 준 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후행 작업의 위탁계약을 취소 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급자재를 상당기간 지연하여 공급한 사실로 인해 납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을 받아 납품한 목적물 중 일부를 당사의 수주실패 또는 지연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부품의 제조를 이미 완료한 경우 회사의 생산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의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부품의 제조를 이미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당초 위탁한 규격과는 다른 규격의 것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부품의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사례

- 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사실관계]

000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ㅁㅁㅁ신축공사 중 기계 설비 공사 등을 건설 위탁한 후 2019년 3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

- 000은 당시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이후 000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하였다.



부당반품의 금지

(1) 유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하도급법 제10조)

[부당한 위탁취소 vs 부당한 수령거부 vs 부당반품]

- 부당한 위탁취소는 납품 전, 수령거부는 납품하는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부당반품은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이다.



(2) 반품의 예외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반품은 가능하다.
- ① 발주한 목적물과 다른 물품 등이 납품된 경우
- ② 오손·훼손 등 하자 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 등

(3) 법 위반 유형

- 불명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반품
- ①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거나 정하긴 하였으나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타당하지 않은 검사기준 및 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경우 부당반품이라고 볼 수 있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을 이유로 한 반품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품하는 것을 말한다.
-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또는 클레임
- ✓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 장소 부족
- ✓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 워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
- ①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 때문인데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된다.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한 반품
- ① 만일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부자재·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경우 부당 반품에 해당된다.
-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된다.
-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는 부당반품에 해당된다.
- 하자에 대한 책임
- ①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할 경우 부당한 반품에 해당된다.

[업무 시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반품하여
 서는 안되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손)의 대상이 된다.
- 반품의 위법성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되므로 이러한 과정 전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 발주 착오로 인한 반품, 당사가 물품의 운송이나 보관상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품질상의 하자를 이유로 반품, 가공이나 조립단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등은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업무 시 유의사항]

- 해당 목적물의 납기일 이후 수령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당반품에 해당된다. 다만, 납품된 해당 목적물의 품질이 사전에 약정된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납품시기가 늦어진 경우에 한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Do's]

- 반품 사유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 클레임약정서는 사전에 교부되어야 한다.
- 사전에 서로 약정된 계약 규정대로 반품을 하되, 반드시 검사결과를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Don'ts]

- 검사 기준 및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당사가 공급한 자재 등의 품질불량 또는 공급지연 등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관련 사례

[사실관계]

000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조 위탁(2018년 8월)한 마스크팩 실크 원단 30만장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판단하여 재발방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 및 △△△는 자신의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2016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이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2016년 5월 수령하였으나, 3.9백만 원 상당의 위탁목적물을 물품 초과 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였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고 그 만큼을 감액한 하도급 대금합계 1.8백만원 및 동 금액에 대하여 감액한 날(2008년 12월 30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지연이자(연리 25%의 이율 적용)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1) 원칙

-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 ①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 해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제9조 제1항).
- ②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여기서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준의 객관성· 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 검사결과의 통지의무
- ① 통지기간
 -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동법 제9조 제2항).
- ② 통지의무의 예외
 - ✓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 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된다.
- 검사비용문제
- ①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통보 의무의 예외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 ① 검사대상 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②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검사와 반품의 관계(대량 납품하는 경우)
- ①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샘플검사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납품 받은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 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3) 법 위반 유형(검사의무와 관련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는데, 먼저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해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서면 미발급이 있다. 또한 검사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 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이행하여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여야 한다.

[업무 시 유의사항]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 검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와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연장과 관련한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 당사자 간의 검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제3의 기관에게 검사를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검사에 합격 한 것으로 본다.
- 법정검사기일(10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 검사 결과 통보는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구두통지는 법 위반이다.

[Do's]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화시켜야 한다.
- 목적물 수령 후 수령증명서와 함께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Don'ts]

- 검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 법정검사기일 이후에는 반품이나 불량을 이유로 감액을 하지 않는다.

(5) 관련 사례

[사실관계]

2017년 5월 15일, 수급사업자 000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제조 위탁한 후 동년 9월 8일, 수급사업자 000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음에도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바,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 하였다.

[사실관계]

피심인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11개 수급사업자에게 00전자 인테리어 부분공사 등을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 경과한 이후에 검사를 완료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바,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심인은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Rightarrow)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금지

(1) 원칙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 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의 명목과 방법,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 행위는 금지된다 (하도급법 제11조).
- 즉,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 시에 정해진 금액(발주 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하도급법상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감액의 정당성 판단기준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성 유무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3) 법 위반 유형

- 소급단가 적용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인하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에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였다. 이것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이다.

- 원사업자의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 ①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을 이유로 감액
- ①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이다.
-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
- ① A사는 B사에게 조립용 부품을 제조 위탁하였다. 이후 B사는 A사의 검사에서 합격된 조립용 부품을 A사의 보관 창고로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포장지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A사는 포장지 훼손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납품 대금의 30%를 감액하였다. 이와 같이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는 감액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 ①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즉,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 납품시점에 떨어진 물가나 자재가격
- ①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부당감액이다.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 ①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부당 감액으로 본다.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는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이 감액이유 및 방법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 ①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그 밖의 경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도 부당감액에 해당된다.

[업무 시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리 교부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발급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감액사유와 기준
- ②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③ 감액금액
- ④ 공제 등 감액방법
- ⑤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
- 감액 시 공정위가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 견적 시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 발주 시 소량 발주하는 경우는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Do's]

- 수급사업자의 소홀한 장비관리로 인한 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정당한 감액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 감액을 하기 전 감액 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감액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

[Don'ts]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까지 인하된 새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 고객사의 발주취소,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된다.

(5) 관련 사례

[사실관계]

000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제품 이상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여 하도급대금 15백만 원을 감액하였다.

- 페널티 부과의 구체적인 내역, 즉 불량품의 개수와 내용,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하자 발생 원인을 수급사업자에게 설명하거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 또한,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정산 서류를 작성하여 하도급 대금 36백만 원을 감액하였다.
- 수급사업자가 생산·납품하는 제품이 아닌 데도, 반품 내역에 포함시켜 해당 금액만큼 대금을 감액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품 및 감액을 하였다.

[공정위 판단]

하도급법 제11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원칙적 금지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인정되고 있으나 페널티 부과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자의 서명 조차 없어 신빙성도 의심되는 등 페널티 부과의 정당성이 전혀 입증되지 못하여 공정위는 과 징금을 부과하였다(대금 미지급행위와 합하여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금지

(1) 기술자료가 되기 위한 요건

-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자료를 말한다.
- ①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③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④ 기술자료에 해당하려면 수급사업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여야 함

<경제적 유용성과 기술성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태도,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1675 판결(상고기각, 판결확정)>

- <u>경제적 유용성</u>: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바로 생산·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기술자료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 사항에 있어서 고유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 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 <u>기술성</u>: 각각의 기술 내용 자체는 수급사업자의 독자적 기술이 아니지만, 라우팅 도면을 기초로 회로도의 내용을 추가하고 해당 부품에 적용되는 기술표준을 찾아내 반영하는 등으로 위 각 기술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도면으로 완성해 내는 것에는 수급사업자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선택한 제조 방법이 기술적으로 최적의 방법임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작되어 장기간 오류 없이 작동해 온 부품의 제조 방법이라는 점에서, 수급사업자의 고유 기술이나 노하우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제3자가 이 사건 하네스 도면을 취득할 경우 해당 부품의 제작 또는 관련 기술·노하우의 습득이 가능해지거나 이에 들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도면의 유용성은 하나의 서면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집약하면서도 일목요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는 것에 의하여 증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가 원고의 회로도와 라우팅 도면 등의 내용을 하나의 하네스 도면으로 구성한 것과 같은 변경 내지추가를 한 것은 앞서 본 수급사업자 고유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반영된 사항들에 더해져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기여 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 기술자료 제공 요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파일 접속·열람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③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④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⑤ 발주자의 승인, 품목 등록, 구매조건 등을 이유로 발주자가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등 발주자와의 거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유의할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할 때에도,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 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반환일 또는 폐기일,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기술자료제공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동법 제12조의3 제2항)

(3)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화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의3 제3항)
 -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②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③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 ④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4) 기술자료 유용행위

- 기술자료의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동법 제12조의3 제4항)
-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공정성 침해 여부 판단>

-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여부
 - ②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 ③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④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5) 손해배상 책임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제출을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강제로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35조 제1항),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동법 동조 제2항).
- 다만, 기술요구 또는 유용의 경우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동법 동조 제1항, 제2항).

(6) 법 위반 유형

- 기술자료제공 강요행위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④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 취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업무 시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② 요구 목적
 - ③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④ 권리귀속관계
 - ⑤ 기술자료의 대가
 - ⑥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⑦ 기타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

[Do's]

<기술자료 요구>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마다 기술자료 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기술자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 공동기술개발약정 체결 후 그에 따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공동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출원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 납품 제품의 하자 발생 원인 규명, 불량 예방 등 공동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 공동기술 개발 참여 여부,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적용 여부, 거래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능력의 평가 또는 부품 승인 등에 필요하여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서면을 작성한 후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수의계약 시 또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통한 위탁 계약 시 아직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주문품의 기준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개략적인 원가내역이 포함된 견적서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 폭 결정을 위해 해당 원재료의 원가 비중 자료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당사의 기술전수 또는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위 전수 또는 경영지도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유용>

- 공동개발 기술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자료를 사용한 경우

[Don'ts]

<기술자료 요구>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구두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유도하는 경우
-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유용>

- 기술이전 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기술을 공여한 경우

[Don'ts]

- 기술력을 심사한다는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당사의 기존 거래처나 관계사 등에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동일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여 제품을 납품 받은 경우
-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납품 단가의 인하를 요구한 경우
-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그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출원하는 경우

(5) 관련 사례

<ㅇㅇㅇ 및 ㅁㅁ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20기감0730, 의결2022-083> - 기술유용

[사실관계]

피심인은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독일회사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심인은 독일회사에 자신의 고객사에 납품할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제공하여 독일회사의 금형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금형 국산화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피심인과 신고인은 2010. 9. 16. 맨드릴 납품을 시작으로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에 관한 하도급거래를 하였다.

- ① 피심인은 피심인의 중국법인에 제공할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 중 '맨드릴의 설계도면'을 전화로 요구하였고, 신고인은 동 도면을 이메일로 제공하였으며 신고인과 민관공동투자 개발사업 공동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작성을 위해 신고인에게 맨드릴 제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를 전화로 요구하였고, 이에 신고인은 '금형개발 연구노트'를 제공하였으나, 피심인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신고인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② 피심인은 협력사 성과공유회에서 우수성과로 발표하기에 앞서, 신고인의 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를 전화로 요구하였고 신고인 이메일로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조공정별 사진을 제공하였다. ③ 그런데 피심인은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하면서 신고인이 제공한 맨드릴 제조방법을 특허 청구항으로 사용하고, 제조공정 사진과 도면 중 절개도를 각각 특허 도면으로 사용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① 피심인이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수입한 독일회사의 기술로 금형 및 도면을 신고인에게 제공하였으며, 레이저 커팅'은 금형을 제작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기술의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설사 독일회사의 제조방법에서 착안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인은 자신의 고유기술과 노하우를 투입하여 그 제조방법을 구체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심인이 금형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완제품을 다시 분해하고 역설계하여 해당 도면을 작성하였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도면은 신고인의 기술자료라고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심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성과공유회에서 '터보차저호스 성형 진공금형 국산화 건'을 성과로 소개하면서 '레이저 가공을 통해 절곡한다는 부분'을 성과로 소개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② 또한 맨드릴 거래는 2010. 12. 31. 납품한 이후 2012. 3. 27. 위탁하기 전까지 후속거래가 없었는데 최초 납품한지 약 8개월이 지난 2011. 8. 9.에 이르러서 품질 검증을 위해 금형 도면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품질 검증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선요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전체 금형 도면을 요구하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범위를 벗어났으며, 중국 법인에 제공할 목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는 제조 등의 위탁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피심인은 절개도와 맨드릴 제조방법과 제조공정 사진을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신고인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심인은 도면 요구행위를 제외한 하도급거래는 맨드릴 거래로 한정되고, 2012. 3. 31.에 목적물을 납품함으로써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조사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위탁 품목이 없거나 위탁한 품목이 아닌 별개 품목에 대해 행위가 발생하는 등의 양태를 고려하면 법 제23조 제1항의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의 거래 단위는 '기술'을 기준으로 관련 하도급거래를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허와 관련된 기술이 적용된 마지막 거래의 입고일이(2016. 12. 14.) 조사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2015. 4. 18.) 이후인 점을 이유로 조사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에게 시정조치와 1,38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 △ △ 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018제하0226, 의결2020-330> - 기술유용

[사실관계]

피심인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고압배전반과 관련된 제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한 승인도 총 20건을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요구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제공받으면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은 자재거래기본계약 및 구매사양서(Purchase Order Specification, 이하 'POS'라고 한다.)의 내용을 종합할 때 승인도는 거래개시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위탁 계약 목적물의 일부를 구성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심인에게 이전되었고 승인도 제공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전체 하도급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자재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면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목적물은 '배전반 패널' 또는 '부스 덕트'이며 승인도는 이 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목적물 제조를 위해 이용되는 사양 서류에 불과하고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며 계약서 또는 그 부속 서류 등에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피심인은 설계 및 제작의 수준이 실제로 도면에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여부 확인, 하자 발생시책임소재 규명, 다른 전력제어 기기와의 물리적 정합성 검토 등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승인도를 요구한 것이므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자료를 요구하면서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 정한 바없고 이를 기재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000는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사에게 제공하였다.

[공정위 판단]

000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하여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다층적 거래관계, 기술자료의 교환 또는 공유 필요성, 소유와 보유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존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 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000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과징금 2.5억 원,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과징금 2.7억 원을 부과하였다.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1) 개념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하도급법 제18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구속하는 행위 ※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2) 경영상의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경영상의 정보 유형
 - 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②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③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④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 (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⑤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업무 시 유의사항]

[Do's]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시 발주처에서 수급사업자의 원가정보를 필수 제출자료 로 지정하여 원가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계약의 특성상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 항목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항목의 실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에게 부여된 수급사업자 관리 및 감독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사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협약체결에 따른 실적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하고,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의 효율성 증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급사업자가 컨설팅 받고자 하는 경영전략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업교육, 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Don'ts]

- 협력사에 대해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면서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 하고 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신의 특허로 개발한 부품이 아닌 일반부품의 제조를 협력사에 위탁하면서, 해당 부품을 자신에게만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차 수급사업자의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관련 사례

[사실관계]

(000은 2010년경부터 협력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력사 임원의 임기, 임원 처우, 배당률, 이익잉여금 등 적정 자본 규모, 지분구성 등 협력사 내부 경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경영관리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관련 협력사에게 이를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요청하였고, '협력사 KPI 평가지침'을 제정한 이후로 매년 협력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토대로 협력사를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인센티브 지급 혹은 페널티 (계약해지, 물량축소 등) 부과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였다. 경영관리 기준에 명시된 협력사 임원의임기가 도래하면 피심인은 해당 자리에 부임할 내부 직원을 후임자로 선정하여 협력사에 통보하고 후임자는 전임자가 보유한 협력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임자의 직책에 부임하였고, 협력사의 임원 전직이나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력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공정위 판단]

임원의 임기, 처우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특히 배당률 및 이익잉여금은 사업자가 자신의 손익, 투자 여부 등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인 점, 지분구조는 의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상법상 독립된 법인인 협력사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간섭할 이유는 없다. 특히,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다음 후임자를 내정하여 임원의선·해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는 협력사가 납품하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 등 피심인과 협력사간 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피심인의 인사적체 해소 및 퇴직자의 편의 제공 창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백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협력사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명하였다.

[사실관계]

ㅁㅁㅁ는 △△△ 등 21개 1차 수급사업자에게 공기청 정기, 비데 등의 부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이들 수급사업자들의 2차 수급사업자와 직접 재하도급 단가를 결정한 후 동 단가대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1차 수급사업자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들은 ㅁㅁㅁ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재하도급 거래시 단가, 물량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ㅁㅁㅁ는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단가결정에 직접 개입하였다. 이는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이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임을 감안할 때 1차 수급 사업자의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납품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써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인정되며, ㅁㅁㅁ가 제품의 품질유지,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의 이유로 1차 수급사업자와 2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 조건에 개입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 대금지급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Rightarrow)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1) 개념

- 워칙
 - ①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 ②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 기준일이 된다.
 - ✓ 여기서의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
- 60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의 예외
 - ① 일괄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본다. 즉,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2) 기간의 계산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3) 지연이자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4)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7.5%)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이 만기인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5)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 의무

-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대금 지급 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을 말한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 해당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사전에 체결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6)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은 현금 외에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법 위반 유형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시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는 어음금이 결제 되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하자이행을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보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Do's]

-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은 대금 지급기일인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Don'ts]

- 수급사업자의 대금 청구 지연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 수급사업자의 하자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유보하여서는 안된다.

(5) 관련 사례

[사실관계]

000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대금을 상각지급*하기로 한 후 잔금을 미지급 하였다.

* 금형 제조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잔금을 금형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본 사건에서 제품 BACK SHELL의 경우, 금형 대금의 50%는 선지급 하고 잔금은 사출품 1개당 단가에 2,450원씩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후, 2017. 3. 13. 발주 이후 4년이 넘도록 추가 발주 없이 계약금의 24%(25백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금형 수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가 비용을 미지급하였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하도급대금 감액행위와 합하여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



선급금 지급 의무

(1) 개념

- 하도급대금은 물품 등의 납품 또는 시공을 완료한 다음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기성금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착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하도급법상 선급금이라고 한다.

(2) 원칙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해야 한다(하도급법 제6조 제1항)



- 만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지급 방법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 준수 의무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 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의무 등이 존재한다.
 - ① 현금결제비율유지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② 어음만기일유지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을 지급해야 한다.
 - ③ 지연이자 지급 의무
 -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주어야 하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1월 15일 선급금을 현금으로 받고 3월 30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60일에 대한 지연이자(연15.5%)를 지급해야 한다.



(5) 법 위반 유형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업무 시 유의사항]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대상품목 등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 이와는 반대로 발주자가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전체 대금 중 하도급 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다.
-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차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기성률)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될 수 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선급금 포기 각서는 부당한 특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Do's]

- 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지연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선급금 지연 지급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 지급 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Don'ts]

- 수급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선급금 포기 각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5) 관련 사례

[사실관계]

2016년 4월 11일 부터 2017년 8월 3일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게 '광양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세풍-중군)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 2, 2-1구간 잔여공사' 등 16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11개 수급사업자에게 16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판단]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대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000에 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Rightarrow)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1) 조정절차

- 조정내역 통지
 - ①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해당 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하도급법 제16조 제2항).
- 변경계약 체결
 - ① 그 다음으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 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정 받은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동법 제16조 제3항)

- 조정금액 지급
 - ①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동법 제16조 제4항)

(2) 조정기준

- 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
 - ①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동법 제16조 제1항).
- 불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
 - ①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 총액지급 방식
 - ①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된다.
 -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적법하나,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미만으로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3) 조정방법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물가변동 대금조정의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여 총액조정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품목별 조정방법의 경우 해당 공종별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세부공사 내역별로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로 해야 한다.

(4) 법 위반 유형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않고 물가변동률이 5%미만이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을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동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 받고도 이를 미지급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조정하지 않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지연조정 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금액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15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업무 시 유의사항]

- 설계변경 등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Do's]

-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으로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조정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고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 협의 절차가 지연되어 30일이 초과되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일수만큼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Don'ts]

-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에 따른 조정을 특약으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5) 관련 사례

[사실관계]

2017년 8월 22일, '00댐 치수능력증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000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

- 2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517만 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 110개 수급 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 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 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의 판단]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1~737일 지연하여 체결한 행위,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금액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8백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선급금 미지급행위와 합하여 과징금 7.35억 원을 부과).

(\Rightarrow)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의무

(1) 수급업자의 조정 신청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6조의2 제7항).
- 구체적인 조정 대금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 시 유의사항]

[Do's]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한다.
-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이 있으며, 조정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 하여야 한다.

[Don'ts]

- 수급사업자의 협상 요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체결(납품단가연동제)

(1) 개념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하도급대금 연동이라 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17항).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시 서면에 연동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제3조 제2항 제3호).
- 연동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
 - ① 주요 원자재에 해당시 연동계약서를 작성한다.
 - ② 주요 원자재에 해당하지만 연동하지 않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한다.
 - ③ 주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연동제와 조정협의제도 비교

구분	연동제	조정협의제도
대상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공급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점	사전 (계약체결시)	사후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 변동시)

(2) 주요 원자재

- 주요 원재료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할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한다. 다만,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연동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노무비(인건비), 경비(운반비 등)는 연동제 대상이 아니다.
- 유상 사급 자재비의 경우 원사업자가 직접 원재료의 판매처에서 해당 원재료를 구입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비용)을 의미한다.

(3) 기준지표

-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다만, 기준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①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 ②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③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를 바탕으로 정한 가격을 지표로 정할 수 있다.

(4) 예외와 미연동 합의

-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아래 경우와는 달리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제4호).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에 부수하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5) 법 위반행위 제재

- 탈법행위 금지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나 벌점(5.1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 기타 법위반행위
 - ① 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 및 사유 미기재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 최대 2점의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업무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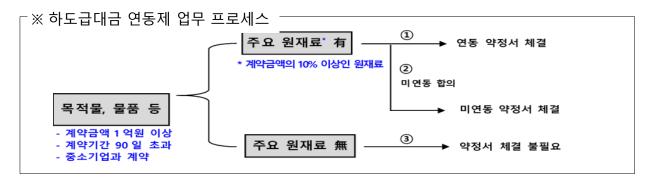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으로 하도급법 제16조와 제16조의2 등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에 유의한다.

[Do's]

-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 체결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회사는 연동계약서 작성시
 - ①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조정 요건,
 - ④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⑤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⑥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⑦조정일, ⑧조정주기 및 ⑨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서에 정한 조정일마다 변동률을 확인하고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 등의 하도급대금을 산출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 등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하도급대금 연동표·변동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Don'ts]

-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탈법행위(쪼개기 계약, 미연동합의 강요 유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bigcirc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의 공시

(1) 개요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3)
 - ① 하도급법 상 공시의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②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로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등을 위탁하는 거래(원도급거래)와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거래(하도급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2) 공시해야 하는 정보

-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① 매 반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을 기재한다. 지급수단은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으로 구분하여 만기를 고려하여 기재한다.
 - ② 지급수단에 따라 구분되는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결제비율'을 기재한다.
-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① 매 반기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을 기재한다. 지급기간은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등으로 구분하고 각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을 기재하면 된다/
 - ② 지급기간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선금 및 기성금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 분쟁조정기구 (매 반기 종료일 기준)
 - ①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견 청취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해당 조직이 구매 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분쟁 조정기구로 보지 않는다
 - ② 분쟁조정기구의 조정 신청 절차, 방법 및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운영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방법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3) 공시 빈도 및 공시 시기

- 매년 2회,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 ① 상반기 공시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8월 14일까지, 하반기 공시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2월 14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단, 공시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 해당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구분(법 조항)	항목	점검사항
하도급법 제2조 (정의)	협력사 선정	 협력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인가? 위탁의 내용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심사 및 평가할 때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사용하지 않는가?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입찰공고	 공지된 입찰 조건에 따라 당사자를 선정하였는가? 사전 예정가는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경쟁입찰로 계약 체결 시, 입찰 및 계약조건을 사전고지 하였는가? 경쟁입찰로 선정 시, 낙찰된 최저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는가? 최초 제시된 낙찰 조건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는가? 최저가 입찰 시 최저가 업체가 배제되었는가? 유찰 기준은 사전에 고지되었는가? 유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발주 및 계약	 위탁 이전에 서면이 교부되었는가? 계약서 없이 선발주 후 계약서를 교부하지는 않았는가? 계약서 및 발주서 없이 물품제조 및 입고요청을 하지는 않았는가? 계약서(단가, 계약조건 변경 등) 작성시 협력사의 서명을 받지는 않았는가? 계약서에 하도급법상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가? (목적물,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대금지급방법 및 기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및 방법 절차 등) 계약서 외 별도 항목의 내용을 추가할 경우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 물량 등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보충서면, 또는 정산서 등을 교부하였는가?
하도급법 제3조의 4 (부당한 특약의 금지)	특약 검토	 하도급 관련 서류(검수, 반품, 대금결정 등)를 3년간 보관하였는가? 계약조건이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가? 특약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가? 특약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 있는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특약이 있는가?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관련 처리 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부담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는가? 책임 분담에 관해 원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편향적인 보상 조항을설정하였는가? 납품 후 또는 납입한 제품의 가공이나 열처리 시 발생한 비용을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였는가?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약정이 있는가? 불량이 발생한 경우,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밀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였는가?

구분(법 조항)	항목	점검사항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대금 결정	 대금 결정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금을 결정하였는가? 원자재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협력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였는가? 물량증대(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협력사에게 견적 하도록 한 후, 실제 소량발주가 되었으나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수출, 할인특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 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가? 단가결정시, 협력사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는가? 단량발주(물량증대)를 약속하고, 단가결정 후, 그에 못 미치는 발주를 하였는가? 수의 계약 대상 업체는 사내 구매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었는가? 수의 계약 시 시장의 정상가 보다 10%이상 단가 인하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위탁 취소 및 수령 거부	 발주취소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었는가?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는가? 당사가 공급하기로 한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PO에 기재된 Lead Time)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는가? 당사가 딜러,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발주한 물품의수령을 거부하였는가? 협력사의 납품수령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관장소 부족 등 당사의사유로 수령을 지연하였는가? 당사에서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 통보한 적이 있는가? 당사가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시장에서 물품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반품하였는가? 거래해지, 거래거절, 거래종료 전 협력사에게 새로운 거래처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1개월)을 주지 않고일방적으로 종료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
하도급법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부당반품	 당사가 이미 수령한 물품에 대하여 고객의 클레임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 당사가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협력사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였는가? 협력사의 납기,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납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였는가? 당사의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였는가?

구분(법 조항)	항목	점검사항
하도급법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시기)	검사	 계약서 작성 또는 발주 나가기 전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기재(포함) 또는 협의하였는가?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였는가? 사전에 합의하여 검사기준·방법·시기를 정한 후에 당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였는가? 검사기준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당사가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정하여 불합격 처리하였는가? 지금까지 적용되던 검사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통상 합격품으로 판정될 수 있었던 제품을 불합격 처리하였는가? 당초 합의된 검사 기준 및 방법과 다른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는가? 불량품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지급을 유보하였는가? 수출할 물품제작을 의뢰한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였는가? 물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로 교환하였는가?
하도급법 11조 (감액금지)	하도급대금 감액	 당사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 납품하지 못한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 계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 하였는가? 하도급계약의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내역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감액하였는가?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 세 등을 단가인하였는가? 대금지급시점의 일반 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였는가?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금을 감액하였는가?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당사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 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켰는가? 당초 정해진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는가? 하도급대금을 인하할 경우, 인하사유와 기준을 해당 협력사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는가?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였는가?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해서 단가를 적용하였는가?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대금 지급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였는가? 수급사업자에게 하자 이행을 위해 하자이행증권과 별개로 일정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유보하고 있는가? 입고하여 검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는가? 협력사와 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로부터 거래대금과 매출대금의 상계처리여부에 대하여 협의없이 상계 처리하였는가? 대금지급 시, 자사 및 기타회사의 물품으로 대금을 지급한 적이있는가?

구분(법 조항)	항목	점검사항
하도급법 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 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대금의 조정	 원자재가격변동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10일이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하였는가? 경제상황 변동(물가변동 등)에 따른 단가반영요청 시 10일이내에협의 절차가 개시되었는가? 30일이내에협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도급법 제12조의 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기술자료 요구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 자료를 요구하였는가? 기술자료 요구 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에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적시하여 제공하는가?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서를 교부하였는가? 세부적인 원가자료 요구 시 서면으로 요구하였는가?
	기술자료 유용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존 계약을 파기하였는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적으로 협력사나 계열회사에 제공하였는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선출원하였는가?
하도급법 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사급자재 및 장비	 협력사에게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당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을 납품하기도 전에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요구 하였는가? 당사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사게 한 후, 당사 납품분에 대해 일부 하도급대금 지급 시 실제 투입한 양보다 더 차감 하였는가?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및동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경영간섭 및 보복 조치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였는가? 협력사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협력사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 하였는가? 협력사의 경영자료 등 일방적으로 자료를 징구하거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경영에 간섭하였는가? 거래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였는가?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를 증설(투자)하도록 하게하고,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중단을 하였는가? 협력사가 당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였는가? 사전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물량축소를 하였는가?



Q&A

- Q. 기본 계약서 교부하고 발주는 VAN (전산망) 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 A.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볼 수 있다.
- Q. 거래 당사자간 상이한 견해가 지속되어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지?
- A.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 하여야 하므로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변경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갱신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당사자간 이견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서면 지연 교부에 해당하며,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존재하여야 한다.
- Q. 사전에 하도급대금을 확정하기가 어려워, 대금의 산정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 A.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시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등) 에 가능한데, ①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 둘필요가 있으며, 또한, ③늦어도 최초의 대금지급시까지는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둘 필요가 있다.
- Q. 단가변경을 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관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 A. 단가 인하에 대해 합의한 일자(단가합의일)와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기로 한 일자(단가변경일)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가합의일 이전의 발주분에 대해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새로운 단가를 적용시에는 합의일 이후 분의 물량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합의일 이전의 물량에 대하여 소급해서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Q. 서비스(용역)거래는 즉시 현금 지불되는 것이 많은데 용역을 제공한 후 60일 이후에 지불한다든지 어음으로 지불하는 등 지불조건의 악화가 우려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가?
- A. 원사업자가 법의 적용을 계기로 일방적으로 지불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과 동시에, 하도급법상으로도 지불조건의 악화를 예상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후에 결정하지 않으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 Q. 발주 시에 서면에 기재할 수 없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초서면에는 "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이유"와 "내용을 확정하게 될 예정기일"을 기재하는 데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는가? 또한 어쩔 수 없이 예정 기일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되는가?
- A. "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이유"는 현시점에서 미정으로 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하고, "예정 기일"은 구체적인 날이 특정될 수 있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다. 서면에 기재하는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 예정 기일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 Q. 역무위탁에는 수령거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약기간 중에 원사업자가 해지통보를 해도 되나?
- A. 역무제공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수령거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급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중단한 경우에는 "부당한 급부내용의 변경" 에 해당한다.
- Q. 당사는 매년 상반기(4월-9월) 및 하반기(10월-3월)에 걸쳐 단가변경을 하여 각 반기 초에 제공되는 역무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와의 단가변경 교섭이 오래 걸려 각 반기의 중반 정도의 시점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있다. 수급사업자와는 각 반기 초에 제공되는 역무부터 신단가를 적용한다는 합의가 성립하고있어 각 반기 초부터 적용해도 문제는 없는가?
- A. 신단가가 적용된다는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에 의해 단가 변경이 행해진 시점 이후 발주분부터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합의일 전에 이미 발주한 부분에 신단가를 적용하는 셈이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의 감액(소급적용)으로 됨. 각 반기 초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면 각 반기 초에 제공되는 역무가발주되는 시점까지 신단가를 결정해 둘 필요가 있으며, 신단가 적용시기에 관해 수급사업자의 합의가 성립하고 있다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되지 않는다.

04 Q&A

Q. 수급사업자의 양해를 얻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은행구좌에 입금할 시의 입금수수료를 하도급대금 에서 공제하고 지불하는 것은 인정되는가?

- A. 발주 전에 수수료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실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수수료를 공제하고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인정된다.
- Q. 거래 당사자간 상이한 견해가 지속되어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 서면 미발급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가?
- A.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용역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변경된 작업에 착수하기 전 갱신된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견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Q. 아래 사항일 경우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은?
 - 업체명만 바뀐 경우
 - 업체명과 사업자 번호가 바뀐 경우
- A. 하도급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규정은 없으나 다만, 질의에서처럼 업체명만 바뀐 경우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업체라고 할 수 있으며, 업체명과 사업자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그 원인이 합병 등의 포괄적승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회사가 소멸되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인지에 따라 거래관계를 재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 Q. 하도급대금 지급 시 어음대신 현금을 지급하고 어음할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다면 부당 감액에 해당되는가
- A.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금지급을 이유로 정해진 하도급대금에서 할인료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할 수 있다.
- Q.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수급사업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과실을 이유로 대금을 유보할 수 있는지?
- A. 법원은 공정위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발주처의 미정산 등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미룰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공정위는 목적물의 인수여부, 대금의 지급여부만을 판단할 뿐 대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시공 중 민원이 생기면 수급사업자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있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민원보상비에 관하여 합의가 되면 이를 상계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민원보상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확정되지 않은 민원보상비를 이유로 확정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따라서, 원사업자로서는 일단 계약상의 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한 다음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민원보상비 또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 Q.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도급 계약과 동일한 대금 지급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인지?
- A.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 계약과 별도의 계약이며,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주기를 원도급계약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하도급법상 규정된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Q. 원사업자가 경영이 부실한 수급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해 자금지원 등을 하면서 업체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 A. 자금지원을 이유로 경영지도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
- Q. 전화로 주문하고 후일 주문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문제가 되는가?
- A. 전화만에 의한 발주는 서면 미발급으로 된다. 긴급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전화로 주문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는, 「주문내용에 따라 바로 주문서를 발급할 것이므로 그것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바로 주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1. I CP의 정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윈한 일련의 규범이자, 시스템

2. | CP도입의 중요성 및 도입 요건

공정위 조사·제재에 따른 금전적 부담 예방

ESG평가 지표 반영

C P 도입 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방지

임직원 법규 이해도 제고, 공정거래 문화 조성·확산

CP도입 8대 요건

CP기준, 절차 마련 및 시행

지속, 체계적 교육 실시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지원

내부감시체계 구축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자율준수편람 제작, 활용

효과성평가와 개선조치

→) CP도입의 중요성

- 공정위 조사·제재에 따른 금전적 부담 예방 :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부담 예방
- 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방지 : 법 위반 사실 보도 등으로 인한 사회 이미지 실추 예방
- ESG평가 지표 반영: 공정거래 CP 적극 활용으로 ESG경영 강화
- **임직원 법규 이해도 제고, 공정거래 문화 조성·확산** : 임직원 스스로 법 위반 예방을 통한 공정거래 인식 향상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CP도입 8대 요건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실천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 적극 지원

3. CP담당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활용

- 자율준수관리자 책임하 공정거래 관련 법규, CP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모든 임직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

5. 지속, 체계적 교육 실시

- CP기준과 절차,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임직원에게 효과적, 정기적인 교육 실시

6. 내부 감시 체계 구축

-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7.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법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고,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 대응 및 재발 방지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효과적 CP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CP기준, 절차 운용 등의 점검 평가와 개선조치 실시

02

CP등급평가

1. | CP등급평가 정의 및 목적

→ CP등급평가란

- CP 8대 도입 요건을 갖추고, CP를 운영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

→ CP등급평가 목적

- CP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충실한 CP운영을 유도 및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 목적

2. | CP등급평가 인센티브



CP등급평가 인센티브 법제화

공정거래법 제 120조의 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CP등급평가 인센티브 상세내용

CP평가등급	과징금감경	직권조사면제	시정명령 공표
최우수(AAA)	15%	2년	공표크기 및 매체수 2단계 하향 조정, 공표기간 단축
우수(AA)	10%	1년6개월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조정, 공표기간 단축
비교적 우수(A)	-	1년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조정, 공표기간 단축
보통(B)	-	-	-
미흡(C)	-	-	-
매우 미흡(D)	-	-	-

03

포스코와이드 CP추진경과

1. | CP추진 경과

회사는 2008년 8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더욱 투명한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8~現

′08.08	CP도입 선언, 운영지침 제정	
′08.12	자율준수관리자(이상필 경영지원본부장) 이사회 신	선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간(1차)
′09.08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2차)	* 하도급법 개정 내용 추가
′10.03	CP전담부서(정도경영팀) 신설, 자율준수관리자	(김진욱 경영지원본부장) 이사회 선임
′10.07	CP등급평가 참여(AA획득)	* 중소기업 기준
′11.10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4차)	* 공정거래 구매·판매부문 사례집
′11.12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5차)	* 하도급 부문 보충
′12.07	CP등급평가 참여(AA획득) * 중소기업	기준
′13.03	자율준수관리자(안윤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14.07	포스코그룹 통합 자율준수편람 발간 * 집필진	회사로 참여('12, '14년 총 2회 참여)
′16.03	자율준수관리자(김주현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18.03	자율준수관리자(이상걸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19.01	수의계약 사전감사제도 도입	
′21.03	자율준수관리자(강윤평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21.10	자회사(엔투비) CP 업무 컨설팅	
′22.09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인증획득	* 그룹사 최초 인증 획득
′22.12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6차)	
′23.08	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분쟁조정기구) 신설	
′23.12	CP등급평가 우수(AA) 획득	* 대기업 기준
′24.03	자율준수관리자(황경호 정도경영실장) 이사회 선임	
′24.03	포스코그룹 CP활성화 TF 참여('24.03 ~ 11)	* 그룹사 SNNC 지원
′24.10	CP운영지침 개정(자율준수관리자 직무 강화, .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CP업무 구체화)
′24.10	회사 홈페이지 내 공정거래 분야 개선	
′25.01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7차)	

POSCO 포스코와이드 www.poscowide.com